

# (사)한국지반공학회 지반공학연구소

## 운영 규정

2017년 5월 11일 제정

2019년 6월 3일 개정

2020년 2월 3일 개정

제1조(목적)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지반공학연구소(이하 연구소)는 지반공학에 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지반공학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연구
2. 정부 및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한 정책, 기준, 설계, 시방에 관한 연구
3. 자체 기획한 정책과제를 포함한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) ① 소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구소 업무를 보고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상근직을 포함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의 직급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2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,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3. 연구원 : 석사학위 소지자
4. 연구보조원 : 학사학위 소지자,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

제5조(연구원의 임용 및 임기) ① 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상근 연구원은 계약직으로 한다.

③ 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④ 연구원의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해서는 ‘사무국 운영 규정’의 관련 항목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진) ① 소장은 연구과제별로 우리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진을 구성한다. 다만 지반공학 분야가 아닌 경우 비회원을 연구진에 참여시킬 수 있다.

② 연구과제별 연구진 구성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.

제7조(업무) ① 소장 및 소속 연구원은 분장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관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②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연구성과 자문을 받아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절차는 ‘학술

연구용역 운영 규정'을 준용한다.

제8조(징계) 연구원의 징계는 '사무국 운영 규정'을 준용한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무·사무국 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 전담이사를 간사로 하며, 연구소장과 전문위원회 전담이사를 포함한 위원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.

1. 연구소 운영규정의 개정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
3. 연구원의 급여, 연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 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소장은 차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12월까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소장은 전년도 결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실적서와 함께 매년 11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12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 (간접연구비) 연구용역의 실행예산상 간접연구비는 '학술연구용역 운영 규정'의 간접연구비 조항을 준용한다.

제12조 (급여 및 경비) ① 상근 연구원의 급여는 연간 계약으로 정한다.

② 연구원의 급여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③ 연구소의 운영경비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간접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상근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⑤ 기타 연구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'사무국 운영 규정'의 관련 항목을 준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폐) 이 규정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.